

등록번호	사회복지과-2587
등록일자	2015.1.20.
결재일자	2015.1.20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장애인복지팀장	사회복지과장	복지환경국장
김동일	주상천	안춘자	전결 01/20 유용렬
협조			

## 2015년도 장애인단체 보호·육성을 위한 지원계획



복지환경국  
사회복지과

# 2015년도 장애인단체 보호·육성을 위한 지원계획

장애인단체 시설운영과 복지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·육성하고자 함

## I 추진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6조(중증장애인의 보호)
- 장애인복지법 제63조(단체의 보호·육성)
-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

## II 추진목표

- 장애인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통한 장애인단체 활동 활성화와 각종 행사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 및 장애인 자립생활 기여
-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으로 적극적인 지역사회 활동참여 지원
- 장애인에게 문화, 경제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 참여할 기회 제공

## III 추진계획

- 추진기간 : 2015년 연중
- 소요예산 : 180,300천원(구비 137,300 / 시비 43,000)

### 지원단체 현황

(2015.1.1. 현재)

단체명	대표자	회원수	설립일	소재지
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	최민오	599	1991. 7.19	퇴계로 460(신당동) 중구유락복지관 3층
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회	한방희	103	2002. 9. 9	퇴계로20길 41-11(남산동2가) 남산센터 1층
농아인협회 중구지부	김두현	399	1998.11. 9	퇴계로20길 41-11(남산동2가) 남산센터 2층
지적장애인협회 중구지부	김경일	200	2009. 2.12	다산로22길 11(신당동)

□ 2015년도 예산지원계획

(단위 : 천원)

단 체 명	추진시기	지 원 내 용	지원금액	비 고
		<b>합 계</b>	<b>180,300</b>	
		<b>소 계</b>	<b>105,280</b>	
(사)서울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	연중	○ 단체 사무실 운영비 - 440천원 * 12월	5,280	
		○ 이동차량지원 - 1.000천원 * 4분기	4,000	중증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장착차량
		○ 체육대회 - 한마음체육대회(자체실시) - 지체장애인체육대회(서울시)	4,000 2,000	
		○ 하계(추계)수련회	4,000	
		○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-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	86,000	시50%:구50%
		<b>소 계</b>	<b>17,320</b>	
(사)서울농아인협회 중구지부	연중	○ 단체 사무실 운영비 - 300천원 * 12월	3,600	
		○ 전산교육사업	6,720	
		○ 체육대회	2,000	
		○ 하계(추계)수련회	2,000	
		○ 남산쉼터 유지보수	3,000	
		<b>소 계</b>	<b>7,600</b>	
(사)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중구지회	연중	○ 단체 사무실 운영비 - 300천원 * 12월	3,600	
		○ 이동차량지원 - 시각장애인 탑승편의를 위해 자동문장착	2,000	차 량 구조변경 1회지원
		○ 하계(추계)수련회	2,000	
		<b>소 계</b>	<b>7,600</b>	
(사)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	연중	○ 단체 사무실 운영비 - 300천원 * 12월	3,600	
		○ 체육대회	2,000	
		○ 하계(추계)수련회	2,000	
		<b>소 계</b>	<b>42,500</b>	
장애인의 날 위문격려 (지체,농아,시각,지적)	4월	○ 장애인의 날 행사경비	2,000	
		○ 장애인의 날 행사개최 - 1,350명 * 30천원	40,500	

□ 기타 지원내역

구 분		단체별 지원내역
사무실 공간지원	구유재산 무상사용	지체(486.35㎡),시각(226.38㎡),농아인협회(181.6㎡)
	임차료 지원	지적장애인협회(임차보증금 2억원)

□ 추진일정

- 2015. 1월 중 : 사업계획서 접수(장애인단체→우리구) 및 지원계획 수립
- 2015. 1. 20 ~ 1. 23. : 예산지원계획 통보 및 1분기 예산배정
- 2015. 6월, 12월 : 사업추진실태 지도·점검
- 2016. 1월 : 정산보고서 및 사업추진실적 제출

**IV 기대효과**

- 장애유형별로 조직된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맞춤형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추진에따른 사업효과 향상
- 장애인단체 추진사업을 적극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시설 부족의 한계 극복 및 장애인복지 증진
-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제공을 통한 사회 적응력 및 자신감 향상